

【특집】

연구윤리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덕이론적 고찰*

정 원 규**

【주제분류】 윤리학, 응용윤리학

【주요어】 연구윤리, 연구윤리 교육과정, 덕이론(덕윤리), 연구윤리 원칙

【요약문】 국내외적으로 연구윤리와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사실 이보다 시급한 것은 당장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라도 연구윤리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필자는 우선 덕이론에 근거하여 투명성, 학문적 충실성, 공정성, 공익성, 학문적 수월성 등으로 집약되는 연구윤리 5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는 윤리적 추론이 아니라 윤리이론의 한 형상화이므로 논자에 따라 이견이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제시된 원칙들과 같이 제안자 나름의 직관적 선호에 따른 것이 아니라 연구 활동의 특성과 윤리적 기준을 조화시켜 일관성과 실천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이러한 원칙을 중심으로 연구윤리 교육과정은 기초 윤리 이론, 기본 연구 윤리 적용 사례, 영역별 연구윤리 쟁점 사례, 연구 윤리 쟁점 교육의 4 주제로 구성하였다. 각각 윤리적, 연구윤리적 관점형성, 연구윤리에 대한 패러다임적 이해, 분야별 연구윤리 문제의 특징 이해, 연구자의 연구윤리 덕목 자기 확인 및 형성을 목표로 하는 이러한 구성을 통해 필자는 연구자들이 현재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연구윤리 문제를 이해하고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서서 스스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며, 연구자로서 자신의 연구 활동을 윤리적으로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6-321-A00017).

**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I. 머리말

이른바 황우석 사태가 발생한지 거의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으로는 표절이나 자기복제 전력으로 인해 공직 임명이 취소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자료 조작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황우석을 옹호하는 내용의 동영상들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한다. 그동안 어느 정도의 표절이나 자료조작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허용하던 분위기였던 것이 사실이고 보면, 이러한 논란에 휘말린 당사자들 중에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관행을 이용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갑자기 논쟁의 한가운데 놓여진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왕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연구윤리의 부재를 악용하는 경우나 부지중에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모두 막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윤리의 정립과 교육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그런데 학술적 성과의 자기 표절 논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연구 윤리의 문제가 사실에 대한 공방에서 기준에 대한 공방으로 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 이는 우리 사회에 연구 윤리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단계이고, 따라서 반드시 부정적으로 평가할 사안인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사람이나 연구윤리 교육방안을 연구해야 하는 입장에 서있는 사람들에게 이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연구윤리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문제는 연구윤리에 대한 세부지침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연구윤리 교육이 가능한 일인가 하는 메타윤리학적(meta-ethical) 의문일 것이다(II절).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연구윤리뿐 아니라 윤리 문제 전반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처럼 윤리적 기준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즉 목적론, 의무론, 덕이론 중에서 어느 이론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구윤리 교육이 어떤 윤리적 입장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윤리학적 논란을 포괄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다만 필자의 논지를 분명히 한다는 차원에서 III절을 통해 연구윤리 교육과정 개발의 배경으로서 필자가 지지하는 덕이론을 재규정하고 그 강점을 간략히 제시해 보았다.

IV, V절에서는 이러한 논의 성과를 토대로 투명성, 학문적 충실성, 공정성, 공익성, 학문적 수월성이라는 연구윤리 5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실천원칙들이 연구자의 입장에 따라 연구활동의 단계마다 실제로 어떤 지침들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예시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처럼 원칙과 지침을 단계별로 규정함으로써 막연한 원칙만을 제시하여 연구자들이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고, 흔히 덕이론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덕목들 간의 충돌 문제도 최대한 비켜갈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VI절에서는 이러한 덕목에 근거하여 어떤 교육과정이 제시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았다. 학문적 수월성의 추구라는 전제 하에 연구윤리 교육과정은 무엇보다 윤리적 관점을 지닐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윤리 이론에 대한 교육 주제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연구 분야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의 종류와 유형에 차이가 나는 현실을 감안하여 공통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연구 윤리 침해 사례 외에 영역별 연구윤리 침해 사례에 대한 교육과정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윤리적 견해를 연구자가 내화하는 과정으로써 딜레마 사례들에 대한 토론 과정으로 포함시켰으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례들도 여기에서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VII절에서는 이러한 교육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

적일지를 교육내용과 연결하여 간략히 서술해 보았다.

II. 윤리 다원주의 시대의 연구윤리 교육

현대와 같은 다원주의 사회의 특징은 무엇보다 지배적인 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던 간에 매우 좁은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허용하는 사회가 다원주의 사회인 것이다.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다원성은 예외가 없다.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문제에서, 임신중절에 대한 태도, 정치적 이념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한 가지 입장을 지닐 것만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다원주의 사회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는 물론 연구윤리와 관련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어떤 이는 연구자의 충실성(integrity)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고, 다른 이는 충실성 보다는 국익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다원주의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해도 이러한 다원성의 증대가 무조건 축복으로 비춰지는 것만은 아니다. 이 글의 주제인 연구윤리 문제와 관련지어 생각한다면 하더라도, 가령 자신이 전에 썼던 논문을 상당 부분 참고하여 새롭게 작성한 논문을 비양심적인 자기 표절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서 다원주의자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 나아가 이에 대해 단일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면, 어떤 차원에서든 피교육자에게 공통적인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연구윤리 교육 과정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 또 어떤 식으로든 그러한 교육 과정을 구성한다 해도 이러한 다원주의적 상황에서 그것이 연구윤리 문제의 해결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무조건적으로 낙관적인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연구자들의 자율에 맡겨 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다행이 적어도 윤

리 이론의 차원에서는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탈출구가 존재한다.

윤리 다원주의 하에서 윤리교육이 가능할 수 있는 첫번째 출구는 우선 다원주의 자체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 흔히 윤리 다원주의를 윤리 상대주의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양자가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즉 모순되는 두 가지 윤리적 태도를 모두 긍정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식론적으로 두 입장은 정반대되는 입장이다. 부연하면 윤리 상대주의는 메타윤리학적으로 비인지주의(noncognitivism)에 속하지만 윤리 다원주의는 인지주의(cognitivism)에 속한다.¹⁾ 윤리 다원주의는 모든 윤리적 언명이나 주장이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통적으로 합의하는 윤리원칙 — 다원성 자체에 대한 긍정, 관용,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해결 절차 등과 같은 다원주의적 덕목 — 이 있고, 각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은 그 외의 영역에 한정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원주의 하에서도 서로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밖에 없는 다원주의적 덕목은 윤리 다원주의 하에서도 연구윤리의 지침이나 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²⁾

두 번째 출구는 롤즈(J. Rawls)나 뷰참(T.L. Beauchamp)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공통된 도덕적 분모에서 찾을 수 있다.³⁾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의의 두 원칙이나 의료윤리 4원칙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정직성’처럼 의무론적 입장을 취하든 결과주의적 입장을 취하든, 기독교적 문화에서 생활했던 유교적 문화에서 생활했던 공통적으로 수용하는 윤리적 덕목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덕목들이 어떤 내용을 지니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윤리교육의 근간으

1) 여기에서 비인지주의는 윤리적 언명은 참, 거짓을 가릴 수 없는 언명이라고 보는 입장을, 인지주의는 참, 거짓을 가릴 수 있는 언명이라고 보는 입장을 말한다.

2) Rawls (1971) §35, (1993) p.144 참조.

3) Rawls (1993) Lecture IV, Beauchamp pp.12-3 참조.

로서 공통윤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 이에 근거한 교육에 대해서도 역시 아무런 이의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세번째 출구는 윤리적 논의대상의 특성에서 찾아질 수 있다. 이번 황우석 사태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학문적 부정행위에 대한 반발은 일반인들보다 과학자 집단 사이에서 더욱 강하게 표출되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사소한 개인적 흠결로 비추어질 수 있는 사안이 과학자들에게는 학자로서의 자격을 문제 삼을 만큼 중대한 과실로 인식된 것이다. 이처럼 윤리적 논의 대상의 특성에 따라 특히 관련자에게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윤리적 요구들이 있고, 여기에서라면 연구 활동과 관련된 이러한 요구들 역시 별다른 이의 없이 교육 내용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리적으로 어느 정도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도 모두 교육 내용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다. 물론 그럴 경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교육효과는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가령, 임신중절에 대해 강의를 한 후, 원래 생각이 바뀌었는지를 조사해보면 수강생들이 애초에 가졌던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입장의 변화와 상관없이 임신중절이 매우 많은 윤리적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절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수는 현저히 증가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윤리적 쟁점에 대한 교육은, 옳고 그름이 어떻게 가려지는가와 무관하게 그러한 문제 자체를 해소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II. 윤리이론과 윤리교육: 덕이론적 접근방식의 불가피성

다음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는 이러한 메타윤리학적 가능성에 기반한 연구윤리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일 것이다.

연구윤리 성립의 배경으로 작용하는 다원주의적 덕목과, 쟁점이 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부분을 논외로 한다면,⁴⁾ 이는 주로 공통 도덕과 연구활동 자체의 규범적 특성에 의해 구성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공통 도덕은 서로 다른 윤리관을 지닌 사람들, 즉 서로 다른 윤리 이론에 근거한 사람들 간의 문제이므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윤리 이론과 그것들의 실천적 수렴으로서의 연구윤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연구활동의 규범적 특성에 근거하여 덕목을 추출하는 방식보다 훨씬 복잡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주제적으로 좀 더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우선 윤리이론은 통상적으로 의무론(deontology), 목적론(teleology), 덕이론(virtue theory)으로 대별된다. 필자는 내용적으로는 의무론에 동조하지만, 그것의 정당화는 덕이론의 논의를 빌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광의의 덕이론적 입장을 지지한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은 고전적인 덕이론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필자가 생각하는 목적론, 의무론, 그리고 덕이론을 개념적으로 명료히 서술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전통적으로 덕이론은 목적론이나 의무론이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에 반해 사람 자체나 그 품성(character)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⁵⁾ 그래서 목적론이나 의무론에서는 특정한 행위가 그 목적을 달성하게 해 주는지, 또는 그것이 의무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그 옳고 그름이 결정되지만 덕이론에서는 그것이 누구의 행위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즉, 그것이 덕인의 행위였다면 덕스러운 행위로, 그렇지 않다면 덕스럽지 못한 행위로 판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덕이론에 대한 이러한 정의에서는 덕인이 누구인지를 의무론이나 목

4) 이는 이러한 가능성이 연구윤리 정립 및 교육내용 구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원주의적 덕목은 연구윤리 이전의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수준에서 연구윤리 덕목과 연결되기 어렵고, 쟁점 사항들은 교육과정에 모두 포함시키면 된다는 점에서 내용 구성의 문제가 별다른 이론적 분석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의를 생략한 것이다.

5) Arrington (2003) p.128 참조.

적론에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발생할 수 있다. 부연하면 덕인의 확인을 다시 덕에 대한 정의에 의존해야 한다면 그것은 순환논증의 오류에 빠지거나 덕의 개념을 다른 윤리 이론에, 즉 의무론이나 목적론에 의존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⁶⁾

고전적인 덕이론에 대한 정의를 변경해야 하는 것은 덕인의 정의와 관련된 이러한 이론상의 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완은 예전처럼 덕의 주체 — 사람이나 품성 — 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덕이론의 정당화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가령 목적론은 좋음을 통해서 옳음을 정의한다. 그리고 의무론자는 좋음과 독립적으로 — 예를 들면 보편성을 근거로 — 옳음을 정의한다. 그러나 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관행과 전통, 나아가 개인의 서사는 가치규정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⁷⁾ 이렇게 보면 덕이론이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목적론, 의무론과 개념적으로 구별됨은 물론, 목적론에서 이야기하는 좋음이나 의무론에서 이야기하는 옳음이 모두 그것을 긍정해주는 관행, 전통, 서사가 전제되지 않으면 애초에 규정 자체가 불가능한 개념들이라는 측면에서 덕이론의 이론적 강점도 분명해진다.

물론 모든 관행이나 전통, 서사가 긍정될 수는 없지 않는가라는 물음은 이러한 덕이론에 흔히 쏟아지는 비판들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를 위해서는 롤즈(John Rawls)의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⁸⁾ 그럴 경우, 덕을 구성해 주는 관행, 전통, 서사는 단순히 그 사회에 전래되고 있는 관습을 일컫

6) 이러한 덕이론의 딜레마는 덕을 품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성향이나 동기와 연결시킨다고 해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그것이 올바른 성향, 동기이려면 먼저 올바른 성향이나 동기가 다른 윤리이론과 무관하게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지 해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7) MacIntyre (1984) pp.186-7.

8) 중첩적 합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Rawls (1993) Lecture IV를 참조하라.

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성원, 또는 관련자 모두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추론되는 핵심적인 사회적 가치들을 의미하게 된다. 물론 볼즈는 자신의 정의론, 즉 의무론적 견해를 옹호하기 위해 이러한 개념을 사용했고, 이러한 개념 자체가 절차주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덕이론의 정당화 장치로서 적절한 것일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절차주의적 정당화 장치가 그 자체로 하나의 사회적 전통에 포함되며, 또 여기에서는 특히 그러한 장치에 의해 추출되는 포괄적 교설들이 연구활동과 관련된 윤리적 전통들이라는 점에서 덕이론적 정당화 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⁹⁾

이상의 논의가 목적론, 의무론과 구분되는 덕이론의 정의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더욱 중요한 것은 연구윤리 교육과 관련하여 이러한 덕이론적 입장이 강조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이다. 맥킨타이어는 이를 덕이론의 우월성을 목적론과 의무론의 제거할 수 없는 모순에서 찾고 있다. 그에 따르면 윤리학은 ‘우연히 현재하고 있는 인간’으로부터 ‘자신의 본성을 실현하면 있을 수 있는 인간’으로 이행하는 방법을 이해시켜 주는 학문이다. 그러나 목적론과 의무론을 포괄하는 근대의 계몽주의적 기획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거부함으로써 ‘목적을 실현하면 가능한 인간’의 관념을 제거해 버렸다. 그리고 그 결과, 인간 본성에 대한 특정한 이해를 통해서 도덕적 신념의 합리적 토대를 발견하려는 기획, 즉 애초부터 달성 불가능한 기획에 매달리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⁰⁾

이는 의무론보다는 목적론에 전형적으로 해당되는 비판이지만 의무론도 맥킨타이어의 화살을 비껴가지는 못한다. 덕이론가들이 흔히 주장하듯이 의무론은 도덕의 영역에서 좋음의 개념을 제거해 버림으로써 의무이상의 행위를 설명하지 못한다.¹¹⁾ 물론 도덕이 단지 법의

9) 슬롯은 필자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계약론을 그 자체로 덕이론을 정당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lote (2002) pp.373-4 참조.

10) MacIntyre (1984) ch.5 참조.

정당근거로만 기능한다면 이러한 의무론의 특성은 비난받을 만한 것이 아닌지도 모른다. 그러나 도덕은 법이 적용되는 영역 밖에서도 인간의 삶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도덕은 법적 의무 이상의 행위도 윤리적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IV. 덕목에 대한 실천원칙적 이해: 연구윤리 5원칙

이렇게 재규정된 덕이론의 실천윤리학적 함의는 형태적으로 원칙주의(principlism)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그 내용과 정당화 방식과 관련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가령 필자의 입장을 뷰참과 칠드레스의 원칙주의와 비교해 보면,¹²⁾ 이들의 원칙은 우선 공리주의적 원칙과 의무론적 원칙을 병렬적으로 배열함으로써 특정 윤리 이론을 편파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덕이론적 접근방식과 유사성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들은 그 대신 특정 윤리 이론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약점을 가진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대안은 롤즈(John Rawls)의 입장을 원용하여 숙고된 도덕 판단, 또는 도덕적 정합성, 곧 반성적 평형의 방법에 의해 이러한 원칙들을 포섭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다시 이러한 4원칙은 왜 정당화 방법과 일관적이지 못한지, 즉 의무론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어떠한 전략을 택하든 일관성 있는 이론적 정당화가 뒤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덕이론적 이해를 통해 실천적으로 어떤 연구윤리 원칙과 어떤 교육과정이 도출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가령 전술한 뷰참과 칠드레스는 자율성 존중(respect for autonomy), 악행회피(nonmaleficence), 선행(beneficence), 정의

11) 황경식(1995) p.633 참조.

12) Beauchamp & Childress (2001) p.12.

(justice)라는 생명의료윤리 4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종래의 의료윤리에서 악행회피와 선행 원칙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던 것에 새롭게 자율성 존중 원칙과 정의 원칙을 추가한 것으로, 칸트 이후 강조되어 온 의무론적 덕목들을 강조한 것으로 설명된다.¹³⁾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스미스(M. Brewster Smith)는 생명의료윤리에서의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각각 인간과 그들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 선행과 악행회피, 정의, 신뢰(trust), 성실성과 학문적 충실성(fidelity and scientific integrity)이라는 연구윤리 5원칙을 제시한다.¹⁴⁾ 이 외에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벨몬트 보고서(the Belmont Report)는 인간에 대한 존중, 선행, 정의라는 3원칙을,¹⁵⁾ 이제키엘(J. Emanuel Ezekiel) 외 3인은 사회적 또는 학문적 가치, 학문적 타당성, 공정한 실험대상 선정, 선호할만한 위험-이익 비율, 독립적 검토,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잠재적·현실적 실험 대상에 대한 존중 등에 대한 7가지 요구를 주장한다.¹⁶⁾

이러한 원칙, 또는 강령들은 물론 모두 어느 정도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실천원칙이란 그것이 발생한 사회나 집단에 따라 사뭇 다를 수 있고, 또 관련 사안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며, 나아가 간략히 서술하는가, 혹은 상세히 서술하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적 차이가 곧바로 이론적, 실천적 문제를 낳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이러한 원칙이 아무런 이론적 배경이나 설명 없이 제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논의한 류참과 칠드레스의 4원칙 외에도, 여타의 원칙 모두 단순히 이미 제안되었던 원칙을 다소 변형하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문제되었던 사안만을 강조할 뿐, 그것이 어떤 윤리적, 실천적 근거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 물론 현실적으로

13) 같은 곳.

14) Smith (2000) p.5.

15) The Belmont Report(1979) <http://ohsr.od.nih.gov/guidelines/belmont.html>.

16) Ezekiel 외 2인(2000) p.2703.

는 연구 관련자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실천적인 방법일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에 대한 정당화는 그러한 선택의 중요한 한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생략될 수 없는 요구인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필자는 연구윤리의 정당근거, 즉 공동도덕과 연구활동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연구윤리 원칙을 설정하고자 한다. 그것은 투명성(transparency), 학문적 충실성(scientific integrity), 공정성(fairness), 공익성(public interest), 학문적 수월성(scientific excellence)으로 집약되는 5가지 원칙인데, 우선 학문적 충실성과 학문적 수월성은 연구활동의 특수성에 근거한 원칙으로, 공정성과 공익성은 공동도덕과 관련된 원칙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투명성은 이러한 원칙들을 확인가능하게 해주는 논리적 필요성에 의해 요청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¹⁷⁾

부연하면 먼저 학문적 충실성은 관련분야가 연구활동이라는 점에서 연구윤리에 고유한 덕이라 할 수 있다. 논자에 따라서는 ‘객관성(objectivity)’이나 ‘정확성(accuracy)’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학문 영역에 따라 ‘객관성’이라는 용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정확함’ 또한 학문적 기준의 척도가 될 수 없는 분야가 존재하므로, 좀 더 포괄적이면서도 학문적 부정행위에 대한 금지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 ‘학문적 충실성’이라는 용어를 선택했다. 또 혹자는 ‘충실성’을 수월성이나 투명성까지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나, 필자는 ‘학문적’이라는 수식어를 첨가함으로써 학문적 타당성

17) 이 글의 중간발표 과정에서 덕이론은 품성(character)을 강조하는 것인데, 덕목이 아닌 실천 원칙을 제시하는 것은 덕이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몇몇 한국 윤리학회 회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3절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덕이론과 목적론, 의무론을 구별해 주는 요소는 그것의 품성 관련성이 아니라 정당화 방식의 문제라고 본다면, 애매모호한 덕목을 제시하는 것보다 내용이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고 그것이 품성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덕이론과 목적론, 의무론을 구별해 주는 요소가 품성 관련성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한 더욱 상세한 논의는 Barron 외 2인(1997) pp.34-6을 참조하라.

과 관련된 윤리적 내용만을 포괄하는 원칙으로 한정하였다. 기존의 어법을 볼 때, ‘충실성’에 대한 이러한 폭넓은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를 너무 광의로 해석할 경우, 그 실천적 의미가 너무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문적 수월성은 연구행위의 특성상 그러한 수월성의 추구가 단지 이기적 욕구의 충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발전, 나아가 광의의 공익실현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 포함시켰다. 아울러 연구윤리가 자칫 연구관련 규정의 나열이 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전술한 것처럼 윤리는 단지 의무를 거스르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구하는 행위는 비록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윤리적인 행위로 칭송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것은 의무적인 행위는 아니라는 점에서 규정화할 수는 없으며, 그런 면에서 의무만으로는 모든 윤리적 행위를 포괄할 수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연구윤리가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연구관련 규정의 의미만을 갖는다면,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헌신적인 연구자의 행위는 연구윤리에 적합한 행위로 여겨질 수 없을 것이다. 학문적 수월성은 이런 맥락에서 연구자의 헌신을 촉구할 수 있는 덕목으로 설정하였다.

또 어떤 입장을 지니고 있든 간에, 현대의 다원주의적 상황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원칙은 다원주의의 허용범위에 포함되는 포괄적 견해들의 중첩적 합의¹⁸⁾에 의하지 않고서는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원칙은 현대의 대표적인 윤리이론들, 즉 의무론과 결과주의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필자는 그러한 요구를 ‘공정성’과 ‘공익성’의 항목에 반영했다. 물론 공정성이나 공익성이 각각 의무론과 결과주의를 대표하는 유일한 덕은 아니다. 가령 부침처럼 정의나 악행회피라는 또 다른 덕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정성의 경우, 어떤 덕목을 강조하든 공정성을 전제하지 않은 덕목

18) 여기에서 중첩적 합의는 물론 롤즈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며, 이론적 차원에서의 중첩적 합의를 의미한다. Rawls (1993) Lecture IV 참조.

— 가령 공정하지 못한 정의 — 은 전혀 의무론적인 덕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공정성은 의무론의 가장 기본적인 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익성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고전적 결과주의, 즉 공리주의의 최고원칙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악행회피보다는 더 포괄적인 덕으로 생각될 수 있다. 투명성은 그 자체로 윤리적 내용을 충족시켜 주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성과 공익성을 준수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반드시 선행될 수밖에 없는 덕목이다.

V. 연구윤리 5 원칙과 세부지침

그런데 연구윤리 연구자 모두가 이러한 원칙제시적 방식에 동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가령 린커트와 존슨(John Lincourt & Robert Johnson)은 윤리적 기준만 주어질 경우, 실제 연구자들이 이러한 원칙을 어떻게, 어디에 적용해야 할지를 알 수 없을 것이라 우려한다.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추상적 원칙이 아니라 개별 행위의 윤리성을 판정해 줄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⁹⁾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연구윤리 교육을 전적으로 윤리학자들이 담당한 경우에 실제로 발생했던 문제들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실천적인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 어떤 결론도 도출할 수 있는 공허한 원칙보다는 한, 두 가지 행위라도 명확히 판정해주는 정밀한 지침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윤리원칙만 제시되었을 경우의 한계를 지적했다는 점에서는 타당한 것이지만 원칙 제시의 목적 자체가 구체적 행위를 겨냥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즉 원칙이 세부 지침의 정당화 근거로 작동할 뿐 아니라 세부 지침 도출의 상위 범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의 기능과 효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하겠다.

필자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실천원칙과 세부지침의 관계를 새

19) Lincourt & Johnson (2004) pp.353-5.

롭게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예증하기 위하여 <표 1>을 작성해 보았다. 이 표는 투명성, 학문적 충실성, 공정성, 공익성, 학문적 수월성이라는 연구윤리 원칙을 가로축으로, 연구행위, 연구대상, 연구비, 공

<표 1> 연구윤리 실천원칙 및 세부지침 주제 구성표20)

원칙 연구활동		연구자					심사자					
		투명성	학문적 충실성	공정성	공익성	학문적 수월성	투명성	학문적 충실성	공정성	공익성	학문적 수월성	
연구 행위	계획	이해 가능성	정직성	이익충돌	사회적 기대 효과	독창성	비밀 엄수	전문성	전공 중립성	이해 갈등 배제	학문의 자유	
	수행	과정 기록	비조작	비편향	부작용 (환경보호)	엄밀성						
	결과	공적 심사	공동검 토	표절	연구결과 활용검토	학문적 기대 효과						
연구 대상	계획	이해 가능성	사전조 사	대상선정 공정성	위험/이익 계산	선택 기준 명시	신속성	약자 보호	사후 확인	연구 대상 공유 네트 워크 구성		
	수행	IRB 승인	무작위 성	정보제공 동의	생명존중 (고통최소)							
	결과	IRB 보고	원자료 보관	사생활 보호	부작용 책임							
연구 비	계획	이해 가능성	필요성	효율성	절제	지원 기준 확립	행정편 의주의 지양	연구간 형평성	편의 제공 의무	보상/제 재 기준 정립		
	수행	과정 기록	오용방 지 노력								비용/효과 비교	
	결과	결과 공개	활용도 확인									
공동 연구 원	계획	진실성	전문성 (발전 가능성)	인권존중	시너지 효과	아이디 어공유	공익 제보자 보호	책임 제도	상당 제도	연구 비판 리 제도	인적 네트워 구성	
	수행	공지성	신뢰성 (성실성)	권위주의 지양	업무분담 (교육 책임)							숙의
	결과	기여도 명시	책임	직위영향 지양	기여도 반영							상호점 검

20) 괄호로 표시한 부분은 가로축과 세로축의 분류 범주 상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중요한 연구윤리 주제를 구성하는 환경문제, 동물실험, 학생인 공동연구원의 경우를 별도로 유사 범주에 포함시켰다. 또 빗금친 부분은 해당 영역에 덕목이나 주제가 없는 경우이다.

동연구원의 네 범주로 나눈 연구활동을 세로축으로, 그리고 이 모두를 연구윤리에 접근하는 시각에 따라 다시 연구자와 심사자의 두 범주로 나누어 분류해 보았다.²¹⁾ 연구활동의 부분은 특별한 기준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영역을 편의에 따라 분류한 것에 불과하다. 연구윤리가 문제시되는 흐름에 따라 더 간단하게, 또는 더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구자 윤리와 심사자 윤리를 구분한 것과 관련해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심사자 윤리 구분의 핵심은 동일한 사안에 임하는 연구자와 심사자의 위치가 서로 같지 않음에 근거한다. 예를 들어 투명성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우선 연구계획을 이해가 가능하게 작성해야 하며, 연구과정을 기록하여 필요한 경우 참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논문 수록이나 출간을 위해 공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반면에 심사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에는 연구자가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밟고 있는가를 심사할 수 있는 능력 외에, 또 그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 계획을 누설하거나 남용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물론 연구자의 연구활동과 심사자의 심사활동은 분절 단위가 다르므로 덕목 적용의 상세함과 범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세부지침들과 관련해서는 현재 연구윤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실제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관련 주제를 언급 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세부지침과 관련해서는 연구윤리 관련자들 간에 더욱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연구 분야에 따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부지침의 내용이나 우선순위가 서로 다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관련 주제를 원칙에 따라 분류하는 것만으로도 실천원칙의 비실천성과 관련된 실제 연구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 실천원칙들이 세부지침을 도출하는 과정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도 충분히 예시할 수 있었다고 확신한다.

21) 이는 Ezekiel 외 2인(2000) p.2702를 참조한 것이다.

나아가 이는 덕이론에서 흔히 문제시되는 덕목간 충돌의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해소될 수 있는지도 보여 줄 수 있다. 가령 황우석 사태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학문적 충실성과 국익의 충돌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른 범주의 문제라는 사실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설령 국익이 더 중요하다 하더라도 황우석의 행위가 학문적 충실성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황우석이 더 이상 학자의 신분을 유지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익은 공익성과 관련된 원칙으로서 일반적인 윤리적 전통을 반영한 것이지만 학문적 충실성은 연구자 집단의 특성이 반영된 범주로서 학자의 자격 요건을 결정하는 것은 국익이 아니라 학문적 충실성일 것이기 때문이다.

VI. 덕이론적 연구윤리 교육과정을 제안하며

그러면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연구윤리 교육과정을 구성해 보도록 하자. 교육과정 구성을 위해서는 먼저 교육의 대상과 목표, 내용 등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교육 대상은 대학 학부 이상의 전문직 종사자로 한정했다. 중등교육에도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전문 영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내용과 전문 영역이 최소한도라도 결정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내용은 판이하게 구별될 수밖에 없고,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이 궁극적으로 전문 연구자를 위한 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학 이상의 고등 교육 기관에서 연구윤리 교육과정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윤리 교육의 목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세밀성의 정도만 통일한다면 전체적으로 그리 큰 차이를 보일 수는 없다. 가령 매킨지(G. Calvin MacKenzie)가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²²⁾ 윤리교육의 목적은 윤리적 관점형성, 상황인

22) 가령 매킨지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교육 목표를 설정하였다 : 도덕적

식, 그리고 도덕적 책임감의 형성 등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필자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연구윤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 목표를 설정하였다.

연구윤리 교육 목표: 연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윤리적 관점을 형성하고, 연구자의 전문 영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이해하며, 관련 덕목을 내화하여 문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부연하면 윤리 교육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윤리적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윤리적 관점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는 우선 인식론적으로 윤리적 문제를 윤리적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논리적 선행성의 차원에서 당연히 되어야 할 내용이기도 하지만, 다른 관점과 달리 윤리적 관점은 윤리개념의 속성상 종합적이거나 우선적(overriding)이며, 주관적으로나마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강한 실행성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어떤 다른 목표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할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또, 연구자의 전문 영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윤리적 문제를 예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자로 하여금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관점형성의 인식론적 의의와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관련 덕목의 내화는 윤리적 관점 형성과 맞물린 것으로, 종종 윤리적 관점 형성이 실행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를 경계한 것이다.

교육주제는 이상과 같은 목표와 앞 절에서 논의하였던 연구윤리 실천원칙 및 세부지침에서 도출될 수 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기초 윤리 이론’은 윤리적 관점 형성을 위한 주제이다. 윤리이론

상상력을 자극하기, 윤리적 쟁점을 인식하기, 분석적 기술을 발달시키기, 도덕적 의무와 개인적 책임에 대한 감성을 이끌어내기, 의견불일치와 애매함을 명료화하고(resisting) 관용하기. MacKenzie (1980) ch.III.

〈표 2〉 연구윤리 교육내용 구성표

대주제	소주제	세부목표
기초 윤리 이론	결과주의, 의무론, 덕이론 연구윤리 5 원칙	윤리적, 연구윤리적 관점 형성
기본 연구 윤리 적용 사례	연구윤리 역사 표절, 자료 조작, 연구 대상 권리 침해	연구윤리에 대한 패러다임적 이해
영역별 연구 윤리 적용 사례	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음	분야별 연구윤리 문제의 특징 이해
연구윤리 쟁점 교육	자기표절, 신뢰도, 연구윤리 위반자 징계, 이해갈등의 범위	연구자의 연구윤리 덕목 자기 확인 및 형성

의 근간을 형성하는 세 이론 외에, 진술한 투명성, 학문적 정확성, 공정성, 공익성, 학문적 수월성 의 연구윤리 5원칙을 탐구한다. 물론 윤리 다원주의 상황에서 단일한 윤리적 관점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윤리적 관점을 형성한다는 것은 적어도 목적론, 의무론, 덕이론 또는 이러한 이론들이 절충된 관점을 통해 사안을 판단하게 하는 것이지, 이러한 모든 관점으로부터 초월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기초적이거나 윤리이론의 학습은 필수적이며, 또 그것이 연구윤리 문제에 적용되었을 때, 어떻게 원칙화될 수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리고 ‘기본 연구 윤리 적용 사례’와 ‘영역별 연구 윤리 적용 사례’는 이렇게 학습된 윤리적 관점이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모색해 보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연구윤리의 역사 또는 발전 과정과 함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나 사례들보다는 빈번히 발생하고 내용이 분명하면서도 윤리적 관점이 전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윤리 쟁점 교육’은 윤리적 관점 및 관련 덕목의 내화와 관계된 부분이다. 다원주의적 상황에서 윤리적 문제들은 특정한 입장을 강요하거나 전체적인 합의를 통해 해결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히 윤리적 관점이나 윤리적 침해 사례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만으로는 교육효과라는 면에서 오히려 윤리적 문제를 비켜가거나 아니면 자신의 입장을 반성 없이 교묘하게 정당화하는 능력만을 제고하는 교육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나 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학습자 자신의 윤리적 입장이 무엇인지, 그것을 변형할 필요는 없는지를 공동으로 확인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무엇보다 스스로의 입장을 대상화, 주제화 시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II. 맺음말: 연구윤리 교육 방법에 대한 제언

교육과정은 사실 교육 목표와 그에 상응하는 주제 및 내용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즉 교육 방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론 필자가 강의식 수업방식을 택하거나 토론식 수업방식을 택함으로써 수업 내용과 구성이 달라져야 한다는 미시적 차원의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교육여건과 강의자의 신념에 따라 얼마든지 가변적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 정규 교과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온라인 교육이나 단기 연수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은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교육 주제 자체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해도, 교육 내용은 양적인 측면에서나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필자가 염두에 둔 교육 방식은 정규 강좌 형태이다. 무조건 교육의 양과 질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 최선의 교육은 아니지만, 교육 내용을 감안하면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해 보인다. 예를 들어 온라인 교육의 경우에는 기초 윤리 이론에 대한 교육이나 쟁점 교육이 어려워진다. 매체의 특성상 1 대 1 소통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단기 연수를 택한다면 단순히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에 접하는 정도에 그치거나 자신의 어떤 입장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에서 멈출 가능성이 크다. 또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서 연수를 시킬 경우에는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해서 연구윤리 단일 과목의 형태로 연구윤리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럴 경우 영역별 연구 윤리 적용 사례들을 학습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공학윤리나 생명의료윤리, 기업윤리 등처럼 현재 개설되고 있는 과목들을 활용하거나 생물학 연구윤리, 사회과학 연구윤리처럼 영역별 특성에 맞는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나 손화철의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현재 개설되어 있는 윤리관련 과목들은 연구윤리와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있다 해도 비중 면에서 연구윤리 교육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²³⁾ 이런 상황에서라면 이른바 과학계 원로들의 표절 시비에서 나타난 것처럼 연구윤리를 확립하자는 논의 자체가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현실이 언제까지나 낫설지 않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23) 손화철(2007) 참조.

참고문헌

- 정원규 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체계 추론을 위한 이론적 고찰』, 『21세기 정치학 회보』 16집 1호(21세기 정치학회, 2006. 5) pp.365-83.
- 손화철, 『한국 대학의 연구윤리 교육 실태 분석』, 『연구윤리 교육을 위한 윤리학적 토대 분석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 윤리학회 2007년 동계 워크숍(한국 윤리학회, 2007. 2. 23).
- 추병완, 『미국의 인격교육』, 『국민윤리연구』 제36호(서울: 한국국민윤리학회, 1997) pp.219-234.
- 황경식, 『개방사회의 사회윤리』(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5).
- Arrington, Robert L., *Western Ethics: An Historical Introduction*, (Blackwell Publishers Ltd., 1998) (김성호 역) 『서양 윤리학사』(서울: 서광사, 2003).
- Marcia W. Barron, Philip Pettit, Michael Slote, *Three Methods of Ethics : A Debate* (Blackwell Publishers Inc., 1997).
- Tom. L. Beauchamp & James F. Childress,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5 ed.) (Oxford UP, 2001).
- J. Emanuel Ezekiel, David Wendler, Christine Grady, “What makes clinical research ethical?”, *JAMA* Vol. 283 No. 20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000) pp.2701-2711.
- John Lincourt & Robert Johnson, “Ethics training: a genuine Dilemma for engineering educators”, *Science and Engineering Ethics* (2004) Vol. 10, pp.353-358.
- MacIntyre, Alasdair,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2nd ed.)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4).

- MacKenzie, G. Calvin, *Teaching of Ethics in Higher Education* (The Hastings Center, 1980).
- Rawls, John,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P, 1971).
- Rawls, John,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P, 1993).
- Slote, Michael, *From Morality to Virtue* (Oxford UP, 1992) (장동익 역) 『덕의 부활』(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2).
- Smith, M. Brewster, “Moral Foundations in Research With Human Participants,” *Ethics in Research with Human Participants*, Edited by Bruce D. Sales and Susan Folkman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0) pp.3-10.
- The 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Research Subjects of Biomedical and Behavioral Research, *The Belmont Report* (1979) <http://ohsr.od.nih.gov/guidelines/belmont.html> (2007. 3. 19).

ABSTRACT

Considerations of Research Ethics Curriculum
Using Virtue Theory of Morality

Jeong, Won-Gyu

There has been much debate concerning guidelines for research ethics. Above all, the most urgent matter is to establish a systematic curriculum for research ethics. To do this, I suggest five principles of research ethics; transparency, scientific integrity, fairness, public interest, and scientific excellence. These are not the results of ethical reasoning, but the results of virtue ethical speculation. So other ethicists may not agree to them. However,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those principles should not be based on intuition only, and that they should be consistent with attributes of research activities and criteria of research ethics.

I also suggest four topics for research ethics curriculum. They are basic ethical theories, an examination of general research ethical violations, an examination of research ethical violations in particular disciplines, and controversial issues in research ethics. The goals of these topics are forming one's own ethical point of view, understanding paradigmatic examples of research ethics, understanding discipline-specific examples of research ethics, and identifying one's own ethical standards, respectively. Furthermore, the purpose is to encourage researchers not only understand and identify the problems of research ethics, but also to reflect on their

own ethical attitudes.

Keywords: Research Ethics, Research Ethics Curriculum, Virtue Theory, Virtue Ethics, Research Ethics Principle

